## 당직근무규정(3-1-10)

#### 당직근무규정을 폐지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1994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로 시행한다.

#### (별지 제1호)

소 속	행 정 지 원 처			
팀 장				

# 당직변경신청서

아래와 같이 당직근무를 변경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 . . .

구 분	성 명	당직일	당직구분	변경사유
변 경 전				
변 경 후				

위 원 인	(인)
	(인)

### 당직근무요령

- 1. 당직자는 근무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.
- 2. 당직자는 학교 재산관리와 근무에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총무팀장, 총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3. 당직자는 비상시의 지출물, 방범, 방화에 필요한 기구의 소재처, 각실 출입구의 위치, 문의 개폐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4. 당직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.
  - (1) 비상시 지출서류의 배치와 수량
  - (2) 각실의 소화기 수도전의 배치
  - (3) 각 실의 열쇠
  - (4) 교직원 주소 및 전화번호
  - (5) 회중전등, 양초, 성냥 등
- 5. 내방자가 있을 때에는 용건과 성명을 일지에 기재하고, 적절히 처리할 것이며 긴급한 용건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
- 6. 잔류자 또는 특근자가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로 신고(당번 당직자)한 다음 퇴실하 도록 하여야하며 당직자는 반드시 퇴근상황(17:00이후)을 확인, 보안점검 카드에 기재 하여야 한다.
- 7. 공휴일에도 교직원의 출입을 파악하여야 한다.
- 8. 내방자에게는 친절히 응대하되 쓸데없이 교직원의 주소,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임의로 교내를 배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9. 교내에서 불온 또는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당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교외로 퇴교시켜야 한다.
- 10. 당직근무 시간 중에는 일반출입문을 폐쇄하고 일정한 출입문만을 통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1.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는 상대방의 성명, 용건 등을 물어 비고란에 적어 다음날 아침 관계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며 긴급사항을 즉시 사무처장 또는 당해 소속장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얻은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.
- 12. 모든 우편물(등기, 속달, 전보 포함)은 문서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- 13. 총무처장 특별지시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물품의 반출·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.
- 14. 긴급한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당번 당직자는 즉시 각 구역별 당직자와 서로 연락하여 공동으로 방범, 방화, 비상반출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(긴급한 사태란 화재, 도난, 인 명피해 기타 지시가 있을 경우)
- 15. 이사장실, 총장실, 각 처장실, 각 사무실의 점검은 출입문 폐쇄여부만을 확인하고 실내의 출입은 금한다. 단, 긴급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번 당직자 외 1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간다.
- 16.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무처장과 소방서에 연락하고 비치된 소화 기구를 활용하여 소화에 전력하여야 한다.
- 17. 비상지출서류 등은 별도 정하는 순서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반출하고 보관책임자에게 보관을 의뢰하여야 하며 특히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.
- 18. 강우, 강풍, 강설이 심할 때에는 침수, 누수, 문단속 등에 주의하여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19.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외에 일반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.
- 20. 당직근무자는 무단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무원처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